

#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전현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215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8. 28.

발의자 : 전현희 · 신창현 · 김철민

박광온 · 기동민 · 조정식

임종성 · 권칠승 · 심재권

이후삼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어려운 전문용어인 “지육”을 “지육(枝肉: 도살하여 미리, 내장,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)”으로, “가금”을 “가금(家禽: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)”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보장을 하고,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2조, 제8조의2, 제12조의2).

##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8호가목 중 “지육(枝肉)”을 “지육(枝肉: 도살하여 머리, 내장,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)”으로 한다.

법률 제16114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8호가목1)의 개정규정 중 “지육(枝肉)”을 “지육(枝肉: 도살하여 머리, 내장,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)”으로 한다.

법률 제16114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 중 “가금(家禽)”을 “가금(家禽: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)”으로 한다.

법률 제16114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중 “난좌”를 “난좌(卵座: 가축의 알을 운반·판매 등의 목적으로 담아두거나 포장하는 용기)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① -----.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“이력관리대상축산물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말한다.	8. -----.
가. 국내산이력축산물: 개체 식별번호가 부여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이나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돼지를 도축 처리하여 얻은 축산물 [지육(枝肉)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을 말한다]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	가. -----.
나. (생 략)	-----.
9. ~ 13. (생 략)	-----.
② (생 략)	-----.
법률 제16114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	법률 제16114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① -----.

<p>1. ~ 7. (생 략)</p> <p>8. “이력관리대상축산물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말한다.</p> <p>가. 국내산이력축산물</p> <p>1)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이력 관리 대상 가축이나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돼지, 닭, 오리를 도축 처리하여 얻은 축산물[지육(枝肉)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을 말한다]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</p> <p>2) (생 략)</p> <p>나. (생 략)</p> <p>9. ~ 13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 <p>법률 제16114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</p> <p>제8조의2(가금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) ① 닭, 오리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농장식별번호를 다음</p>	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가. -----</p> <p>1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지</p> <p>육(枝肉: 도살하여 머, 내장,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)-----</p> <p>2)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~ 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법률 제16114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</p> <p>제8조의2(가금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---	---

<p>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닭, 오리의 <u>가금(家禽)</u> 이동신고서, 거래명세서 등(이하 “가금 이동신고서등”이라 한다)에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.</p>	<p>----- ----- 가금(家禽: 집에 서 기르는 날짐승)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~ 3. (생 략)</p>	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② · ③ (생 략)</p>	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법률 제16114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</p>	<p>법률 제16114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</p>
<p>제11조의2(계란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 · 관리 등) ① ~ ④ (생 략)</p>	<p>제11조의2(계란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 · 관리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⑤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력번호 발급 및 표시 등을 위하여 계란을 운송하는 경우 농장식별번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<u>난좌</u> 또는 운송상자에 표시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.</p>	<p>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난 좌(卵座: 가축의 알을 운반 · 판 매 등의 목적으로 담아두거나 포장하는 용기) --.</p>

⑥ • ⑦ (생 략)

⑥ • ⑦ (현행과 같음)